

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및 반환명령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수령한 수당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행정처분 통지서 및 반환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10. 8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



- 1. 건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및 반환명령 알림(김O민)
- 2. 근거: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지침, 행정절차법 제14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 능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김O민	1975.2.28.	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 수급에 따른 행정 처분 및 반환명령 알림(김O민)	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부정수급하여 행정처분 및 반환명령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음	○ 2회차 구직촉진수당 600,000원 반환 ○ 구직촉진수당 등 의 지급 중단·지급결정 취소 ○ 취업지원 종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5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기도 오산시 (이하 생략)

- 4. 공고 기간: 2026.10.8. ~ 2026.10.23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오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최지원(Tel. 031-8024-982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